■ 공소청사건사무규칙 [별지 제320호서식] <개정 2026. 10. 1.>

○○○공소청

우편번호/ 주소/ 전화/ 팩스/

제 0000-0000 호

수신자 귀하 발신자 ○○○공소청

검 사 ㊞

제 목 **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**

우리청 제 호 사건과 관련하여 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를 통지합니다.

허 가 서 번 호	
전 기 통 신 가 입 자	
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사유 통지여부	□ 통지대상
	□ 통지제외 대상 [] 국가의 안전보장,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[]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[] 증거인멸, 도주,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[] 피의자,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 청 사 유	(통지제외 대상인 경우 '해당없음' 기재)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